

서울고등법원(인천) 2023. 1. 12 선고 2022나12990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재판경과

서울고등법원(인천) 2023. 1. 12 선고 2022나12990 판결

인천지방법원 2022. 5. 13 선고 2020가합66649 판결

전문

원고, 항소인 채무자 A의 파산관재인 B

피고, 피항소인 C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태승

담당변호사 이삼호

변론종결 2022. 12. 15.

판결선고 2023. 1. 12.

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2. 5. 13. 선고 2020가합66649 판결

주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주위적으로, 피고와 주식회사 D(이하 'D'이라 한다) 사이의 제1심판결의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한 2018. 1. 18.자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50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 예비적으로, 피고와 D 사이의 같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한 2018. 1. 18.자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. 피고는 E, A, F에게 같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한 위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. 피고는 원고에게 111,111,11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,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.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.

○ 제1심판결 제4면 제19행과 제20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.

『원고는, 채권자가 채무자의 대표이사로서 직접 채무자를 대표하여 사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할 기대가능성이 없으므로 채권자의 파산관재인이 사해행위의 취소원인을 안 때부터 제척기간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, 그와 같이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. 오히려 원고의 주장대로라면,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스스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 정한 단기 제척기간이 이미 경과하였음에도, 이후 채권자가 파산하여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었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다시 채무자를 상대로 한 사해행위취소의 소제기가 가능한 결과를 가져와 불합리하다.』

2. 결론

그렇다면,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박순영, 판사 김범진, 판사 이강은